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15-118
----------	----------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및 시험인증분야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2016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국내 중소 승강기 제조기업의 수출전략화를 위한 종합 지원기반 구축을 하고자 함.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 업무 협약서 제3조(2014.6.23)
 - 거창승강기R&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3조(2013.12.20)
- 대 상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총괄책임자 강인구센터장)
- 사 업 비 : 2,250백만원(도비 1,150백만원, 군비 1,100백만원)
 - 총사업비 : 5,050백만원(국 1,600 도 1,150, 군 1,000, 기타 1,200)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타 (KTL)
합 계	3,600	2,250	5,050	1,600	1,150	1,100	1,200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3,500	2,150	3,750	1,600	1,150	1,000	-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사업	100	100	1,300	-	-	100	1,200

※ 국비 1,600백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수행함.

○ 사업내용

1. 승강기산업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 총수행기간 : 2014. 9. 1 ~ 2017. 8. 31.(36개월)
- 총사업비 : 9,800백만원(국 3,900 도 2,750 군 2,750 민간 400)
- 세부사업 내용

가. Pilot 생산지원설비 구축 : 승강기 완성품 및 부품의 시험생산 및 시제작품 제작에 필요한 설비 승강기산업 지원 클러스터가 조성된 거창승강기R&D센터에 구축

나. 중소기업 공동모델 개발 : 중소기업 연합체를 통한 100% 순수 국산 수출전략형 승강기 시스템을 개발하며, 국제 규격(EN-81)에 부합하는 공동모델 제품 개발

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 승강기 제조기업간 자유로운 제품유통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승강기 제품(부품 및 시스템)의 분류체계를 규정하여 승강기 시장활성화 토대 마련

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마케팅창구 개설·운영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수출마케팅, 국내승강기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현지기업과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상설 전담기능 구축

2.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사업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사업비 : 130백만원(군비 100백만원, KTL 30백만원)

※ 거창승강기R&D센터 예산 1,300백만원중 100백만원 군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가. 시험인증분야 신규 사업개발 : 방화시험분야 KOLAS 획득, 공인시험 지원체계 구축, 방화시험설비(문세트시험장치) 보강 구축

나.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 내환경 시험장비 부대시설 구축, 장비 Upgrade 교정 및 유지관리

3. 부서의견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 고도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출연금을 편성하였고
-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사업은 거창승강기R&D센터의 자립화를 위해 재정지원으로 거창승강기 R&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따라 거창승강기R&D센터 예산 1,300백만원중 100백만원 군비를 편성 하였으므로
- 2016년에 예산 편성한 출연금 2,250백만원은 타당함.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및 업무협약서 : 붙임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사업명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및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사업					
단체현황	기관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거창승강기R&D센터)				
	기관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충무공동)				
	설립일	1966년 4월	대표자	이원복		
	업종	서비스 및 기술연구용역	대표번호	055-791-3114		
	기관형태	기타공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113-82-06228		
	기관소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관으로 시험인증과 기술지원을 통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거창승강기R&D센터) - 승강기 KC안전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 제품개발 지원/ 해외인증 획득 지원 / 수출시장개척 지원 / 네트워크확대 지원 등 승강기분야 One-Stop 통합지원 솔루션을 제공.				
총괄책임자	성명	강인구	직위	센터장		
	부서	기계시스템본부 승강사업센터 /경남지역본부(겸)	전화	055-940-6500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 2014. 9. 1 ~ 2017. 8. 31 (36개월)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12개월))					
사업비	사업명		계	2014	2015	2016
	구조및 기술 고도화 사업	국비	3,900	1,000	1,300	1,600
		도비	2,750	500	1,100	1,150
		군비	2,750	750	1,000	1,000
		민자	400	100	100	200
		소계	9,800	2,350	3,500	3,950
	시험인 증사업	군비	300	100	100	100
		KTL	3,300	1,000	1,100	1,200
소계		3,600	1,100	1,200	1,300	
지방자체단체	지자체명	책임자	전화	실무담당자		
	경상남도	이한복 사무관	055-211-6432	강정훈 주무관		
	거창군	김성윤 계장	055-940-3701	이기용 주무관		
참여기관	참여기관명	책임자	전화	실무담당자		
	경남테크노파크	정순현 선임연구원	055-253-6414	정순현 선임연구원		
9) 실무담당자	성명	김재진	전화	055-940-6501		
	부서/직위	기계시스템본부 승강사업센터 / 연구원	휴대전화	010-2835-2812		

[붙임 2]_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58호, 2014.12.23., 일부개정]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5.20.>

1.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1.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15.5.28.]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5.26., 타법개정]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30.]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수행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경상남도(이하 "도"), 거창군(이하 "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이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중 지방비(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수행 및 역할)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와 "군"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와 기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KTL"은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서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3조(사업비 교부 및 집행)

(1) "도"와 "군"은 본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필요한 예산(도비, 군비)을 교부 하여야 한다.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계	5,500	1,250	2,100	2,150	
도 비	2,750	500	1,100	1,150	
군 비	2,750	750	1,000	1,000	

(2) "도"와 "군"은 "사업비"교부후 사업수행이 미미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3) "KTL"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법령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정하는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정산)

"도"와 "군"은 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KTL"은 정산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사업 이행여부 확인 등)

“KTL”은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도”와 “군”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도”, “군”, “KTL”은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도”와 “군”이 “KTL”에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결과의 활용)

“KTL”은 거창승강기밸리의 발전을 위해 사업결과 성과물이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 (1) “KTL”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KTL”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도”와 “군”은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기타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확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에 각 기관의 장이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6월 23 일



경 상 남 도 지



거 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거창승강기R&D센터 운영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경상남도(이하 "도"), 거창군(이하 "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재)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거창승강기 R&D센터(이하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 "군", "KTL", "경남TP"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승강기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체계)

"도"는 총괄책임기관으로서, "군"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KTL"이 주관기관이 되고 "경남TP"가 참여기관이 된다.

제3조(기관 역할)

- (1) "도"는 "센터" 전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인력파견 등 총괄책임
- (2) "군"은 기업유치, 행정지원 인력파견 등 행·재정 지원 및 관리·감독
- (3) "KTL"은 센터 관리·운영, 국비지원과제 및 기업지원사업 발굴 등 주관
- (4) "경남TP"는 국비지원과제 및 기업지원사업 발굴 등에 참여

제4조(조직 구성)

주관기관은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배치,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약당사자와 협의를 통하여 파견인력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소유권 및 임대)

"군" 소유인 "센터"의 부지는 "경남TP"에 무상임대하고, "경남TP" 소유인 기업지원동과 시험연구동은 "KTL"에 무상임대하며, 테스트 타워 및 시험장비 등은 "KTL" 소유로 한다.

제6조(운영 책임자 임명)

“센터”의 운영 책임자는 주관기관이 “군”과의 협의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7조(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을 해지할 경우 1년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사항)

기타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확행을 위하여 협약서 4부에 각 기관의 장이 서명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2월 20일



경 상 남 도 지 사

홍인도



거 창 군 수

이흥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이영자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민민